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4월 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조례의 근거법령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’21. 6. 10. 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에서 인용하는 각종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, 용어를 변경함(안 제1조 부터 제5조까지, 제12조 및 제17조).
- 다. 근거법령의 제정(’21. 6. 10. 시행)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2) 입법예고(’21. 1. 21.~2. 10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”를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”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도시림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”를 ““도시숲”이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생활림”이란 법 제2조제5호”를 ““생활숲”이란 법 제2조제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6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0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3조제1항”으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20조”를 “법 제6조”로,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도시림”을 각각 “도시숲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도시림등”을 “도시숲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도시림”을 “도시숲”으로 한다.

제17조 후단 중 “도시림”을 각각 “도시숲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</u> <u>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산림자원</u> <u>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20조의2</u>에 따라 위임된 <u>도시</u> <u>림등</u>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도시림</u>”이란 「<u>산림자원의</u> <u>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(이 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 다.</p> <p>2. “<u>생활림</u>”이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 다.</p> <p>3. “<u>가로수</u>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</p>	<p><u>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</u> <u>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도시숲 등</u> <u>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<u>제13조</u>----- <u>도시</u> <u>숲등</u>----- ----- ----- 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도시숲</u>”이란 「<u>도시숲 등의</u> <u>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이 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----- --.</p> <p>2. “<u>생활숲</u>”이란 법 제2조제2호 ----- --.</p> <p>3. ----- 법 제2조제3호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특별시 행정구역 내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.</p>	<p>-----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.</p>
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 ----- --- 법 제13조제1항----- ----- 도시숲등의 의 ----- -----.</p>
<p>1.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</p> <p>3.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·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1. 법 제6조----- 도시숲등 ----- -----</p> <p>2.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----- --</p> <p>3. ----- 도시숲등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·본부·국장이 되고,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도시숲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12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·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이 경우,</p>	<p>-----</p> <p>--.</p> <p>③ ----- 도시숲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도시숲등-----</p> <p>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위원의 의무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도시숲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간사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간사는 <u>도시림</u>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<u>도시림</u> 업무 담당자가 된다.</p>	<p>----- <u>도시숲</u> ----- ----- <u>도시숲</u>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김현화(02-2133-2161)